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예비군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부 불리한 처우 사실관계 확인 및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 등〉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97호)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9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조사항	4
IV . 검토의견	5
1. 비상근 예비군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 인정	7
2. 국방부장관 불리한 처우 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요구	10
3.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	13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5

I. 제안경위

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397호)

가.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2. 26.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398호)

가.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397호)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398호)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참조사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398호)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3 신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발생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학교의 장 등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0조의3(장기 소집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예비군대원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

현행	개정안
	<u>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u> <u>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 <u>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u>

현행	개정안
<신설>	이하의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비상근 예비군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 인정

□ ‘비상근 예비군’ 제도¹⁾는 2014년부터 동원위주 부대의 간부 예비군(육군 79명)을 연간 30일 이내로 소집 및 훈련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하였음. 2021년 12월 「예비군법」 및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30일 이내 단기 소집(단기 비상근예비군)만 가능했던 것을 180일

1) 「예비군법」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내 장기 소집(장기 비상근예비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집 대상 또한 기존 간부에서 병 직위까지로 확대하였으며 2025년 현재 약 3,700여명(단기: 3,489명, 장기: 254명) 규모의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음.

□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훈련 참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을 휴가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²⁾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및 「병역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병역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훈련 등 모든 예비군 훈련에 적용되므로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도 적용되고 있음.

2)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예비군 훈련 종류>

구 분	병역법 근거 훈련	예비군법 근거 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동원훈련 I형)	동원훈련 II형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작계훈련
훈련대상	1~4년차(병) / 1~6년차(간부)		5~6년차(병)
훈련형태	2박 3일	4일 또는 2박 3일 ³⁾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대원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 기간이 장기인 일부 비상근 예비군 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를 두려는 것으로 최근 신설된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직장·학교에서의 휴무·결석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 일반 예비군은 현행법 제6조⁴⁾ 또는 「병역법」 제50조⁵⁾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집되고 소집기간이 2박3일 또는 4일 내외인 반면,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에 의해서 선발된 후 소집되고 소집기간은 일반 예비군에 비해 장기간(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 소집 가능함.

3) 4일 대상자 : 1~4년차 병, 미참석자 등, 2박 3일 대상자 : 간부, 공군 병

4)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5)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비상근 예비군 편성인원 및 훈련 일수>

구 분	2024년					2025년				
	인원	훈련일수				인원	훈련일수			
		70일	100일	140일	180일		70일	100일	140일	180일
장기	93명	12명	33명	41명	7명	254명	27명	93명	103명	31명
단기	4,101명	연간 15일 훈련				3,489명	연간 15일 훈련			

자료: 국방부

□ 다만, 개정안 조문에 따르면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비상근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면 훈련 소집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무·결석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비상근 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일반 예비군에 비하여 클 것임.

□ 국방부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다른 일반적인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 비상근예비군에 대하여도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은 직장·학업 보장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국방부장관 불리한 처우 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요구

□ 현행법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직장·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학교의 장 등에게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가하고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벌칙⁶⁾ 및 과태료⁷⁾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형사적 제재인 벌칙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소집 참석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는 등 교수·강사 등 교직원에 의한 불리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부과 대상에 교직원을 추가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통과(시행일 2025.9.19.)된 바 있음.

<불리한 처우 신고 현황(국민신문고 접수 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8건	12건	-	-	53건	15건	26건

※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예비군 훈련 미 실시
자료: 국방부

□ 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 발생 시 해당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사실 관계 확인

6)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예비군법」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및 필요 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의견 진술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불리한 처우 확인 시 시정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법적인 불리한 처우 행위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재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불리한 처우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대학에 실무적 차원에서 불이익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관 간 협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문제를 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를 행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람이 교직원인 경우 과태료 부과⁸⁾ 대상으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징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 기관의 인사 및 임직원 관리의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징계 요구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 한편, 개정안 제10조의4제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징계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8)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방부임.

했는데, 개정안의 시정·징계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애초에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⁹⁾

-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참석을 이유로 결석처리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군 처우와 관련된 실효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

- 현역장병의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이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지휘계통, 상담관, 내부공익센터, 국방헬프콜 등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군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는 상태임.
- 이에 개정안은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비전력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예비전력 강화 필요성과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예비군의 적극적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담 조직은 구성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9) 법무부도 같은 의견임.

<예비군(동원) 관련 민원 접수 현황(국민신문고 접수 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괄 (각군 포함)	3,624건	3,738건	962건	668건	3,099건	4,379건	4,179건
국방부 본부	303건	346건	539건	249건	1,245건	427건	651건

※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예비군 훈련 미 실시
자료: 국방부

□ 다만, 국방부 내에 설치된 별도의 민원 처리 부서인 ‘국방민원센터’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고,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주요 업무인 불이익 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 업무는 신규로 추가되는 업무라기보다는 기존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소관 업무¹⁰⁾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군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방부는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관하여 사실조사 및 후속 조치까지의 일련의 업무 및 예비군훈련 관련 민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개정안의 예비군권익보장센터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인사복지실) ⑩ 예비군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예비군 육성 지원,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9. 예비군 훈련 민원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는 예비군대원의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국방부 국방민원센터, 예비전력기획과, 예비군훈련정책과에서 수행 중으로 기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4조의5(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3조의3과 제73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병역법」 11)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0조의 4 및 제10조의5를 준용하려는 것임.

□ 다만, 동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훈련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 직장, 학교에서의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병역법」에도 「예비군법」과 같은 취지로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과 관련하여 직장·학업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적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병역법」에도 훈련 기간이 장기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74조의5에서 ‘제73조의3과 제73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조문 인용이 잘못되어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1)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문 의 처
02)6788-5307